

■ 지번부여방법

구분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도시개발사업등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원칙	지번부여지역 인접지 본번에 부번	1필지는 분할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부번	합병대상지번중 선순위 지번을 으로 하되 본번으로 지번이 있을때는 본번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의 중전지번과지적확정측량실시 지역밖의 본번이 같은지번 또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지역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
예외	•최종지번토지에 인접된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지역 최종본번의 다음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부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 으로 부여	토지.소유자가 신청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부여할수있는 중전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경우 •단지식(블록식) 블록단위로하나의본번부여하 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 •최종본번의다음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부여
암기 방법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뎡여 첫본본(으르하고)	본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함선지(는) 신건지	도시 본번(이는) 본본 단(으르) 도축지 행정 했다.
도시개발 사업지역 준용	•도시개발사업등 준공전 지번부여하는 경우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경우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 지목

특 징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물배수 용이)… “과수원”은 재배(자생×)…,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채육용지(송마장), 유원지(경마장) “유지”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물배수가 용이 하지 않는…,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적으로…,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 또는 저장 …,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위한 송수…,
A안의B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부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공군비행장내의 골프연습장
다만,	•다만 운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잡종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부지를 제외한다.(공장용지) •다만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실습지·기숙사·사택 등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임야, 대)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도로) 및부설주차장(주된용지 추종),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잡종지)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 군립공원은 임야이다.
잡종지	변 수 송 차 운전(하는) 이탱 쿵(이는) 도축장 오물(을) 우물에 버리고 야시 (한) 갈대(녀와) 야영비행장 물류장(에서) 잡종(짓) (했다).

■ 면적단수처리

	등록값	등록값의 미만	사사오입	단수처리(끝자리수가0.05㎡, 0.5㎡)
1/500(경계점좌표등록부) 1/600	0.1㎡	0.09㎡~0.01㎡은 0.1㎡로 본다.	끝자리수가 0.06㎡ ~ 0.09㎡올림 0.04㎡ ~ 0.01㎡버림	123.35㎡홀수 외로우니 불입123.4㎡ 123.45㎡짝수 짝있구나 떨어짐123.4㎡ 123.05㎡0 짝수와 같다. 123㎡
1/1,000~ 1/6,000	1㎡	0.9㎡~0.1㎡은 1㎡로 본다.	끝자리수가 0.6㎡ ~ 0.9㎡올림 0.4㎡ ~ 0.1㎡버림	235.5㎡홀수 외로우니 불입 236㎡ 236.5㎡짝수 짝있구나 떨어짐 236㎡ 230.5㎡ 0 짝수와 같다. 230㎡

■ 지적공부

분		내 용
의 의		토지의 소재, 지목, 경계, 좌표와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지 적 공 부 의 종 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편성 : 대장의 편성은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 -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정식명칭),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19자리) : 행정구역은 10자리, 지적공부표시는 1자리(1 → 토지대장, 2 → 임야대장, 3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번은 8자리 ▶ 기능 : 토지소재 파악용이, 지적업무의 전산처리, 토지의 분류, 토지의 특정성 -도면번호, 토지이동사유, 소유권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토지등급
	공유지연명부	1필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표시사항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등록관리 -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필지별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등 (지목과 면적은 등록사항 아님)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정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 토지의 소재, 지 번, 대지권의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원인, 소유권지분등 (지목과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님).
	지적도와 임야도	- 의의 :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하여 놓은 지적공부이다. - 법정축척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1,200 주로이용) -임야도 : 1/3,000, 1/6,000 (1/6,000 주로이용) -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부호), 경계, 도면의 색인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곽선과 그수치,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위치
	경계점 좌표 등록 부	- 의의 : 대장형식의 도면내용인 지적공부이다. -1975년 2차 개정으로 도입. 소관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역에만 작성 비치한다. -장점: 정밀하다. 단점: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다.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토지의 소유자, 면적, 토지형상을 판단하기 위해 토지대장, 지적도 함께 비치한다. - 시행지역 :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기타지역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 비치한다. -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등록사항

지적공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고유번호	소유자	경계점간의 거리	이동 사유	축척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	○	○	×	×	○	○	×	○	○
도면(지적도·임야도)	○	○	○	×	○	×	×	×	(1/500지적도)	×	○
경계점좌표등록부	○	○	×	×	×	○	○	×	×	×	×

소재 **지번**- 공통 **소유자**-**대장**(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은 **지목**- **도면**, **대장**
경계- **도면**(에) (사는)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면적**- **대장**(은) **축척**-**도면**, **대장**

토지이동

토지이동사유

종류	의의 및 대상	신청인	신청의무 및 기타
신규 등록	-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매립지	토지 소유자	•60일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법원판결서 또는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인가확인증사본 •측량성과도 미첨부
등록 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 장 및 지적도에 옮겨등록 하는 것 • 지목변경수반 등록전환 : 산지관리법, 건축 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 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이 변경하여야할 토지 • 지목변경없는 등록전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 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60일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측량성과도 미첨부
분할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 경우와 토 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된 경우	토지 소유자	•원칙(임의적) •예외(60일):1필지의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된 때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측량성과도 미첨부
합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 -요건: 지번설정지역, 지목, 축척, 소유자등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고, 등기여부가 동일하 여야 한다.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에 소유권, 용 익물권, 입차권이외의 등기(압류, 가압류, 가처 분, 가등기, 저당권등)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가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 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안된다. ▸ 합병하려는 각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 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는 안된다.	토지 소유자	•원칙(임의적) •예외(60일):공동주택부지와 공장, 학교, 도 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 공원, 체육용지등의 지목인 토지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지적측량안함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 뀌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법등에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자	•60일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지적측량안함
바 다 된 토 지 등 록 말 소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 야 한다.	토지 소유자	•90일 •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측량성과도 미첨부